

정 관

서기 1954년 7월 31일 제 정
서기 1963년 3월 19일 1 차개정
서기 1963년 7월 15일 2 차개정
서기 1964년 1월 25일 3 차개정
서기 1964년 2월 29일 4 차개정
서기 1964년 5월 7일 5 차개정
서기 1966년 2월 1일 6 차개정
서기 1966년 9월 15일 7 차개정
서기 1968년 2월 1일 8 차개정
서기 1968년 6월 5일 9 차개정
서기 1968년 8월 9일 10차개정
서기 1969년 5월 7일 11차개정
서기 1969년 7월 25일 12차개정
서기 1969년 9월 8일 13차개정
서기 1970년 12월 15일 14차개정
서기 1971년 10월 8일 15차개정
서기 1972년 3월 20일 16차개정
서기 1972년 9월 15일 17차개정
서기 1973년 10월 31일 18차개정
서기 1974년 4월 8일 19차개정
서기 1974년 6월 20일 20차개정
서기 1975년 3월 13일 21차개정
서기 1975년 3월 19일 22차개정
서기 1975년 11월 17일 23차개정
서기 1975년 12월 1일 24차개정
서기 1976년 1월 5일 25차개정
서기 1976년 3월 16일 26차개정
서기 1976년 5월 3일 27차개정
서기 1978년 2월 24일 28차개정
서기 1979년 2월 24일 29차개정
서기 1980년 2월 29일 30차개정
서기 1985년 2월 28일 31차개정
서기 1986년 2월 28일 32차개정
서기 1987년 2월 28일 33차개정
서기 1988년 2월 27일 34차개정
서기 1989년 2월 25일 35차개정

서기	1990년	2월 24일	36차개정
서기	1993년	2월 27일	37차개정
서기	1994년	2월 28일	38차개정
서기	1995년	2월 28일	39차개정
서기	1996년	2월 29일	40차개정
서기	1997년	2월 27일	41차개정
서기	1998년	2월 28일	42차개정
서기	1999년	3월 26일	43차개정
서기	2000년	3월 24일	44차개정
서기	2002년	3월 15일	45차개정
서기	2006년	3월 24일	46차개정
서기	2007년	3월 20일	47차개정
서기	2008년	7월 4일	48차개정
서기	2009년	3월 6일	49차개정
서기	2009년	7월 21일	50차개정
서기	2010년	3월 19일	51차개정
서기	2012년	3월 23일	52차개정
서기	2016년	3월 18일	53차개정
서기	2017년	3월 24일	54차개정
서기	2019년	3월 22일	55차개정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 이라 하고, 약칭으로는 주식회사 GS글로벌, 영문으로는 GS Global Corp.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2. 국내외상사 대리점업
3. 수출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4.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5. 다음 상품의 매매업, 위탁판매업, 중개업, 제조가공업
섬유류, 피혁제품류, 화학제품류, 철강제품류, 가구 및 장치류, 석회비료, 배합사료, 식료품, 지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기계류, 신발류, 석유, 운동 및 경기용구, 차량운반구, 기타 본호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상품 및 서비스(용역)
6. 철, 비철금속류 매매 및 동대행업
7. 제재업
8. 고선박 해체업 및 동기술용역업
9. 군납업
10. 해외공사 수주업
11. 광업
12. 토공사업 및 토석채취업
13. 임산업(임산물 생산, 판매, 조립, 과실수, 묘목재배업 등)
14. 창고업, 자동차 운수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15. 석유류 판매, 판매대행, 수송 및 동관련업
1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7.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18. 수산물 판매 및 동관련업
19. 컴퓨터시스템 임대 및 관련용역업
20.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기계류 판매 및 동정비업
21. 원유, 가스 기타 에너지 자원의 탐사, 채취, 처분
22. 건축업 및 주택사업
23. 기업경영 및 기술 자문업(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 등)
24. 소프트웨어 제작, 출판 및 판매 유통업
25. 폐기물 처리업 및 환경관련 부대사업
26. 골재채취업
27. 도·소매업
28. 전기통신업
2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31. 숙박 및 음식점업
32. 외식사업과 식당 위·수탁 운영 및 식자재의 매매대리업
33. 즉석식품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34. 농·수·축산물 가공 및 동 유통업
35. 여행알선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36.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37. 공업소유권의 알선 및 판매업
38.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
39. 교육사업
40.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 운영업
41. 사이버무역
42. 방문판매업
43. 벤처사업 개발 및 투자
44. 인터넷 사업
 - ①인터넷 쇼핑몰 사업
 - ②인터넷 정보제공사업
 - ③포털사이트 운영사업
 - ④기타 인터넷 관련 사업
45. 운송업
46. 의료용구 판매업
47. 해운중개업
48. 해상화물운송사업
49. 청정개발체제사업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
50.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51.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발전사업
52.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조, 수출입, 판매, 설치사업
53. 석유대체연료 등 녹색에너지 제조, 수출입, 판매업
54. 국내외 발전, 지역난방, 집단 에너지 사업의 개발, 건설,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과 알선
5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장비 판매 및 임대업
56. 산업용 기계, 장비 및 판매업
57.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sgcor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역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 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3%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 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제2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 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 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 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상환주식) ① 회사가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 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 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 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③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 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 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제7조의 4(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발행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주권의 희석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 의 조정조항을 둘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타거래관련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3(일반공모증자)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등기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중 주주총회(제1항 단서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주식으로 한

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의 기간 중 부여시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관계당국으로부터 법령위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제10조(시가발행)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일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 등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주요거래관계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타 주요거래 관계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팔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 등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주요거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대주주,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타 주요거래 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팔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결의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대한매일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식)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표이사(이사회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에 임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회의 결의)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이사회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조, 제 38조 및 제 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지규정에 의한다.

제41조(상담역 및 자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자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 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조의 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41조 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 1항 내지 제 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1조의 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계산

제42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회

의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의 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조의 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중간배당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⑤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가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48조(내규제정)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년 3월 19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3월 23일)

1.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3월 18일)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3월 24일)

1.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3월 22일)

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